언론침해의 시대별 유형

정진석
외대 홍보학과 교수

I. 머릿말

언론에 의한 권익침해문제는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민간신문이 처음 발간될 때부터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근대신문의 역사와 함께 대두된 권익침해에 대한 처리는 법에 의존하는 방법 밖에 없었으나 60 년대 이후부터는 언론윤리의 차원에서 다루는 방법과 법적 처리가 병행하게 되었다.

언론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법에 호소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민간신문이 처음 발간되기 시작한 한말에 벌써 몇 건의 판례가 나왔고, 일제시에는 민족언론을 탄압하는 한 방편으로 명예훼손조항을 적용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언론이 오히려 명예훼손조항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민간신문이 발행되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언론침해에 대한 처리의 사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말에 대명율 무고율로 다스리던 때부터 일제시의 형법과 신문지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 그리고 해방 후 60 년대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법적 처리와 윤리위의 결정에 따른 규제의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의 언론침해사례 등을 시대별로 주로 사건중심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II. 한말의 신문사 피소사례

1. 대한황셩신문 피소사건

필화로 신문사가 고소당해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대한황셩신문이 최초였다. 황성신문의 전신인 대한황셩신문은 7 월경에 (확실한 날짜는 미상)경기도 과천군에 근무하는 관리 김성표의 투서를 게재하여 군수인 길영수의 비위사실을 보도했는데 길영수는 이 기사가 사실무근이라 하여 한성재판소에 고소를 제기했다. 이 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문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고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길영수는 당시 독립협회지가 발간하기 시작한 신문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수구파의 선봉장이었다. 그는 이 재판이 있은 지 얼마 후에는 당시 뎨국신문 기자였던 이승만이 만민공동회에서 가두연설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수천명의 보부상패를 이끌고 와서 몽둥이를 휘두르며 습격했던 일도 있던 인물이다.

길영수는 재판이 있던 날에 영문도 모르는 과천 주민 수백명을 서울로 이끌고 재판소 앞에 와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피소된 대한황셩신문 측에서는 주필 유근이 출두했는데 길영수의 요구로 유연은 투서한 사람은 김성표라고 이름을 밝히고 말았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하던 미일신문은 논설을 통해 투고한 기사가 잘못이 있으면 이를 정정할 일이지 투고한 사람의 이름(취재원)을 밝힌 것은 신문사측의 실책이라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 혹 남의 시비한 것이 있어 그 시비당한 사람이 백지에 없는 일 같으면 신문사에 와서 발명하야 정오를 내고, 그 후에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또 드러내어 기재하고 그 투서한 사람의 성명은 경선히 발설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문사 전례어늘, 일전에 과천군수 길영수씨가 황셩신문에 자기 치적을 논란하였는데 백지에 없는 일을 기재하였다하야 한성재판소에 정소하야 황셩신문 주필 류근씨와 재판을 청하얏는데… 우리는 황셩신문 주필 류근씨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투서한 사람의 성명을 경선히 발설하고 보면 종금 이후로 투서통이 뵈기가 쉽고, 투서하려는 사람들이 각 신문사를 다 일반으로 알까 저어 하노라[1)]
어쨌건 이 최초의 신문피소사건은 신문사측이 투서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신문사에는 유죄판결이 내리지 않았으나 투서했던 김성표는 길영수가 자기를 위협하는 바람에 생명에 위협이 있다하여 소장을 내어서 원고 김성표와 피고 길영수가 재판을 받기까지 하는 사태로 번졌다.[2)]

이 사건은 신문이 투고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을 뿐 아니라 자체의 보도내용을 책임지지 않고,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공개해서 생긴 사건이었다.

2. 독립신문 피소

두 번째 사건은 독립신문이 독자적으로 취재보도한 기사가 문제된 것이었다.
독립신문은 1899 년 3 월 30 일자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했다.

0 구목늑탈 재동사는 류교리의 선산에 위토와 묘막이 없는고로 류씨 종중에서 그 선산구목을 서울사람 십칠명에게 발매하야 위토와 묘막을 경영하려하는데 류씨 1 인이 어떻게 작간을 하였던지 그 구목을 외국사람에게 팔았다하고 휴이 하더니 필경은 리인영씨가 봉산나무라 가칭하고 뺐았다더라.

이 기사에 대해 주한 프랑스 공사관의 통역이었던 리인영은 독립신문을 걸어 한성재판소에소송을 제기했다. 한성재판소는 정리 등 4 ~ 5 명이 초첩을 가지고 신문사로 가 사원 한명을 연행해 갔다가 저녁에 들려보내 주었다.[3)]
이에 대해 주한미국공사 알랜은 독립신문사가 미국인의 재산인데 어째서 나의 승인없이 한국 순검이 들어와 사람을 체포했느냐고 외부에 항의하는 문서를 4 월 1 일자로 보냈다.[4)] 외부는 즉시 경무청에 이를 알아보고[5)] 경무청은 순검을 보낸 일이 없다하므로 외부는 미공사에게 독립신문에 갔던 관리는 순검이 아니라 정리였다고 해명하는 것으로[6)]이 사건은 더 확대되지 않았다.

3. 제국신문의 유죄판결

한말 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첫 케이스다.

발단은 제국신문 1899 년 4 월 22 일자 잡보에 「도적의 도적」이라하여 「도적놈이 관내의 기전 등속을 도적하야 큰 보에 싸가지고 나오는데 무감 10 여명이 둘러서서 빼앗아 갓다」는 요지로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기사에 대해 무감 3-4 명(제국신문 기사에 의함, 시사업보는 약 10 인이라고 보도)이 4 월 25 일 제국신문에 몰려와 사실무근이라고 힐란하고 재판을 청구했다.[7)]
무감들의 고소에 따라 문제의 기사를 제보했던 최상현과 기사를 취재했던 제국신문 탐보원 채규하가 구속되었다. 재판 결과 채규하는 대명률 무고반좌율로 태 60 대, 징역 1 년이란 중형을 언도 받았다.[8)]

이 사건에서 보들이 한선왕조시대에 적용했던 법률인 대명률에도 무고 또는 명예훼손에 관련되는 처벌 조항이 있었던 것이지만 정정보도나 금전에 의한 보상방법이 아닌 체형만으로 이를 해결했던 것이다.

4. 황성신문의 유죄판결

황성신문은 1909 년 3 월 7 일자에 「황련식련」 「민간제압」이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이 기사는 진주 관찰사 황련의 비행을 폭로한 것이었다. 황련은 고소를 제기하여 3 월 30 일에 경성재판소에서 재판한 결과 황성사장 유근에게 태 10 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신문이 정부관리인 관찰사의 공무상 잘못을 보도하여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후 특히 일제시에 관리들이 이런 기사에 대해 사실무근,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하던 사례와 같다. 유근은 판결에 불복하고 공소원에 신고했는데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때는 이미 신문지법이 공포된 이후이므로 신문지법이 적용된 판결이었을지도 알 수 없다.

5. 만세보 필화

1907 년 3 월 만세보가 전남 관찰사 심상익의 부정사실을 게재했다가 피소당했다. 만세보는 심상익이 무안부윤 안기현에게 면화 3 천근과 돈 3 천냥을 달라고 편지했다는 기사를 실었는데 심상익은 광주주사 김종걸을 시켜 만세보를 걸어 고소한 것이다

재판소에서는 만세보 발행인 신충희를 불러 기사를 탐보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고 했으나 신이 이를 거절하자 신을 구속했다. 이렇게 되자 사원 박승옥이 취재원을 밝힘으로써 신은 즉시 석방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세력있는 심상익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신문기자를 구속케 했다하여 다른 신문들이 비판을 가했는데 재판결과는 분명치 않다 [9)]

이상과 같이 한말에도 및 건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있었으나 당시 기록만으로는 어떤 법을 적용하여 판결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밖에도 기사로 인한 소송사건이 몇 건 더 있으나 그 출처가 확실하지 않아 생략한다.

Ⅲ. 신문지법과 형법에 의한 피소

1. 신문지법과 형법의 명예훼손 법규

1907 년 7 월 27 일 이완용 내각은 법률 제 1 호로 신문지법을 공포함으로써 언론침해에 대한 규정이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동법 제 15 조는 「인을 비훼하기 위하야 허위의 항을 기재함을 부득함이라 하여 타인에 대한 비방 또는 명예훼손을 금지하도록 하고, 제 33 조에서 「제십오조에 위반한 경과에는 형법조언률에 의하야 기죄를 논함」이라 하였다.

신문지법에서 규정한 형법은 1905 년 4 월에 제정된 것으로 「조언률」에는 「타인의 관계되는 언단을 고출하야 시비가 전도하거나 분쟁함에 치한자는 태 삼십하되 인하야 일반관리의 명예손해에 관한자는 이등을 가함이라」(제 40 조) 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일합방후에는 일본의 형법 제 230 조와 231, 232 가 적용되었다. 또한 신문지법은 기사에 대해서 관계자가 정정을 요구할 때에는 신문이 이를 게재해주어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항도 있었다.

「제 20 조 기사에 관하야 관계자가 정오를 청구하거나 혹 정오서 혹 변박서의